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2가단2755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민

담당변호사 김용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동준

변론종결 2024. 3. 5.

판결선고 2024. 4. 30.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2022. 4. 29.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 4. 29. 접수 제518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신발 수입대금으로 위장하여 홍콩 가상자산 거래소에 2021. 1. 5.부터 2021. 4. 19.까지 총 20회에 걸쳐 미화 21,483,500불(한화 약 250억 원)을 송금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이하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행위'라 한다), 원고(소관: 서울세관)는 2022. 5. 4. B에 대하여 과태료 376,465,210원을 부과하였다.

나. 위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2022. 6. 23.까지였고, 2022. 7. 7. 기준 가산금이 11,293,950원이 부과되었다(이하 '이 사건 과태료 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와 B은 2021. 5.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1.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은 2022. 4. 29. 피고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같은 날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 4. 29. 접수 제51862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마. 이 사건 매매 당시 B은 이 사건 지분 및 차량 1대(2015년식 ★◆■◀●♠○), 예금채권

31,421,715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은행, D은행, E은행, F은행, G은행, H은행, I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 당시 B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았으나 그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외환거래법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 2022. 3. 21.경 B은 서울세관에서 외환실지검사를 받으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가산자산 구매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이면서 홍콩에서 신발을 수입한 후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것으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고 송금하였다'는 내용인 사실, 2022. 4. 26. 서울세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행위를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고 고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과태료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매매일로부터 불과 일주일의 경과한 2022. 5. 4.경 B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바, 이 사건 과태료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B이 이 사건 매매 당시 타인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돈이나 인출된 현금, 해외 가상자산의 형태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매각한 것은 다른 채권자인 J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함이었고,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추어 적정하게 책정된 가격이었으며, 해당 매매대금이 실제로 J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B의 지인으로,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 행위 외에 B의 다른 외국환거래법위반 피의사건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B으로부터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하려면 현금이 필요한데, J 명의 계좌에 B 자금을 예치하고 B이 필요할 때마다 수표나 현금으로 찾아다주면 월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초경부터 J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하여 B에게 전달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J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대부분 B의 자금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송금의뢰인 대부분이 B이 아닌 제3자였고, 이체된 돈의 출처가 B이라는 점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피고는 B이 타인 계좌 등을 통하여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명의신탁 계좌나 수탁인 등을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위탁한 거래소나 그 규모를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당시에 B에게 앞서 인정한 적극재산(이 사건 지분, 3,100만 원 상당의 예금, 자동차 1대) 외에 다른 재산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B이 J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이 사건 지분을 매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J과 B의 관계, J이 B의 지시를 받고 자금 전달 역할을 담당하면서 월 500만 원의 대가를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4호증(차용증)의 기재만으로는 당시 B이 J에 대하여 7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와 달리 보더라도,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봄이 마땅하고, 이 사건의 경우 이와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 당시 B이 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B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이나 과태료 부과 및 체납사실, 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와 B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점, B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K'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K' 사업체를 이용하여 가상자산 매입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등으로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에 2022. 4. 29. 체결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신혜원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소재지번 : 서울특별시 용산구 , 호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공동주택

1층 428.06㎡

2층 394.76㎡

3층 343.63㎡

4층 246.45㎡

지층 613.21㎡

옥탑 47.51㎡(연면적 제외)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 762㎡

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89.64㎡

4.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비율 : 762분의 52.3